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2-1910-0646-2]

1. 건물정보

건물명	한강난지야생탐사센터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22(상암동)
안전관리자	신 * 근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1.06.17 일까지) 이 * 진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2.09.14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120,560원)

국민은행	19649078969811	기업은행	08201290497644
농협은행	79013420155511	신한은행	56211158247863
우리은행	27494469918380	우체국	81081280839247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
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	정기검사		검사대수			1대		총수수료	120,560원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영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
1	2019.11.03	1(난지-1)	0102-854	권상식	장애인용	3	109,600	0	0	10,960
합계							109,600	0	0	10,960
총합계							120,560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신청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1조, 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

시험하중이 2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신청인께서 별도의 분동을 준비하여야 하며, 2,000kg 이하인 승강기도 직접 분동을 준비할 경우 분동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

건물 내 승강기 전체 보유현황

순번	검사주기도래일	호기(설치장소)	승강기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적재하중(kg)
1	2019.11.03	1(난지-1)	0102-854	권상식	장애인용	3	1,000

- 이하 여백 -

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2-1910-0647-2]

1. 건물정보

건물명	수변생태학습센터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83(상암동)
안전관리자	이 * 희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1.04.24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120,560원)

국민은행	19629078944584	기업은행	08201297297468
농협은행	79013420084746	신한은행	26190178531940
우리은행	27494483418761	우체국	81081280947191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
 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	정기검사		검사대수			1대		총수수료	120,560원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
1	2019.11.03	1(난지-2)	0102-855	권상식	장애인용	2	109,600	0	0	10,960
합계							109,600	0	0	10,960
총합계							120,560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신청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1조, 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

시험하중이 2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신청인께서 별도의 분동을 준비하여야 하며, 2,000kg 이하인 승강기도 직접 분동을 준비할 경우 분동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

건물 내 승강기 전체 보유현황

순번	검사주기도래일	호기(설치장소)	승강기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적재하중(kg)
1	2019.11.03	1(난지-2)	0102-855	권상식	장애인용	2	1,000

- 이하 여백 -

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4-1910-0764-2]

1. 건물정보

건물명	독섬전망복합문화시설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6(자양동)
안전관리자	이 * 주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1.03.14 일까지) 정 * 철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1.04.28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482,240원)

국민은행	67659011208561	기업은행	08201358097404
농협은행	79013420234770	신한은행	26190178855856
우리은행	27494557018581	우체국	81081180239499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
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	정기검사		검사대수			4대		총수수료		482,240원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	
1	2019.11.03	1(1-1)	0049-518	권상식	장애/전망용	2	109,600	0	0	10,960	
2	2019.11.03	2(1-2)	0049-519	권상식	장애/전망용	2	109,600	0	0	10,960	
3	2019.11.03	3(1-3)	0049-520	권상식	장애/전망용	4	109,600	0	0	10,960	
4	2019.11.03	4(1-4)	0049-521	권상식	장애/전망용	4	109,600	0	0	10,960	
합계							438,400	0	0	43,840	
총합계							482,240	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신청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1조, 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

시험하중이 2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신청인께서 별도의 분동을 준비하여야 하며, 2,000kg 이하인 승강기도 직접 분동을 준비할 경우 분동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

건물 내 승강기 전체 보유현황

순번	검사주기도래일	호기(설치장소)	승강기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적재하중(kg)
1	2019.11.03	1(1-1)	0049-518	권상식	장애/전망용	2	1,190
2	2019.11.03	2(1-2)	0049-519	권상식	장애/전망용	2	1,190
3	2019.11.03	3(1-3)	0049-520	권상식	장애/전망용	4	1,190
4	2019.11.03	4(1-4)	0049-521	권상식	장애/전망용	4	1,190

- 이하 여백 -

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9101-1911-0362-2]

1. 건물정보

건 물 명	성수대교남단(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)
건 물 주 소	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73-1
안전관리자	김 * 익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1.03.21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116,490원)

국 민 은 행	52659014670826	기 업 은 행	08201371197790
농 협 은 행	79013420117144	신 한 은 행	56209191238626
우 리 은 행	27377437618386	우 체 국	81081180582641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
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정기검사	검사대수	1대	총수수료	116,490원					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
1	2019.11.13	1(1-1)	0099-306	권상식	승객용	2	105,900	0	0	10,590
합계							105,900	0	0	10,590
총합계							116,490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신청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1조, 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

시험하중이 2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신청인께서 별도의 분동을 준비하여야 하며, 2,000kg 이하인 승강기도 직접 분동을 준비할 경우 분동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(재)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서울지원 02)2068-1237

(재)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



건물 내 승강기 전체 보유현황

순번	검사주기도래일	호기(설치장소)	승강기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적재하중(kg)
1	2019.11.13	1(1-1)	0099-306	권상식	승객용	2	1,350

- 이 하 여 백 -

